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 헌장 운영규정

목 차

제1조 목 적2
제2조 정 의2
제3조 적용대상2
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2
제5조 헌장의 내용
제6조 헌장의 구성3
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3
제8조 헌장의 공표3
제9조 헌장의 실천3
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3
제11조 이행실대 평가 및 환류
제12조 우수 부서 및 부서원 우대조치4
브 치

기업민원 보호 ·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

2021. 02. 19. 제정(규정 제 1317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단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헌장"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기준과 내용,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,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, 이의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기업고객"이란 공단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·기업인 등을 말한다.
- 3. "기업민원 보호"란 규제 개선,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·기업인에 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- 4. "기업고객만족도"란 공단 임직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.
- 5. "민워처리부서"라 민원과 관련된 소관부서를 말한다.
- 6. "민원총괄부서"란 「직제시행세칙」에 의하여 공단의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과 전체 민원처리상황의 확인·점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공단과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적용한다.

- 제4조(헌장의 기본원칙)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
- 2.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
- 3.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

- 4.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
- 5.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워칙
- 제5조(헌장의 내용) 헌장의 내용은 별표1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민원 보호·서비스 헌장과 같다.

제6조(헌장의 구성)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- 1. 헌장 전문
- 2.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서비스 제공
- 3.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
- 4.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
- 제7조(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)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.
-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은 「제규정관리규정」을 준용하다.
- 1.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
- 2. 헌장 공포 및 시행
- 제8조(헌장의 공표)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9조(헌장의 실천)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험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)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 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, 전화, 전자우편,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 ·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업무를 총

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헌장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)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·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, 우수부서 및 부서원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.

제12조(우수 부서 및 부서원 우대조치) 이사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부서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

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"공단·기업 간 소통·신뢰 민원행정"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 드립니다.

- 1.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, 제도나 관행을 정비·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개선,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, 비밀보장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,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,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공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하겠 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, 제도, 정책을 수립하고,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,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※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

-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, 7층 운영지원처
-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: www.kotsa.or.kr
-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전화번호 : 1577-0990

■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10조 관련)

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민원총괄부서에서 작성합니다.

접수일자		관리번호		처리기간	14일	
기본 사항	건의제목 기 업 고 객 담당자					
	및 연락처			및 연락처		
	<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> ○					
기업민원 보호	0					
위반사항 (제기내용)						
관련법령						
기 관	[] 수용	[] 일부수용	[] 장기검토	[] 수용불가	[] 旣 수용	
검토의견						
○ <검토의견> -						
○ <향후계획>						
-						
-						
세부조사 확인사항	0					
기타	0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